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2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5. 25.
4. 회부일자 : 2020. 5. 29.

II. 제안이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9.8.20.)·시행(2020.3.1.)으로 기존 학교에 두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련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조항이 필요없게 됨 (해당 조항 삭제 필요)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
3. 기타 학교 현장의 학부모 활동 목적 및 학부모회 기능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1. 학부모 활동의 목적을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서 '교육활동 참여'로 수정 (안 제1조)
2. 학부모회 기능 중 '학부모 자원봉사'부분 삭제 (안 제5조제2호)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3조제2항)
4.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서신·우편·전자투표'로 확대
(안 제13조제5항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조례안 [별첨 7])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조례안 [별첨2])
3. 협 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
4. 기 타
가. 신·구조문대비표: 조례안 [별첨 1]
나. 입법예고(2020. 4. 23. ~ 5. 12.)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조례안 [별첨3])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조례안 [별첨 4])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조
례안 [별첨 5])**

마. 학생인권영향평가: 조례안 [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26호로 제출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주요 조문별 검토

1) 안 제13조제1항

- 먼저 조례안 제13조제1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¹⁾ 따라 기존 각급 학교에 두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가 각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대체됨에 따라 더 이상 동 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총회의 선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동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인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²⁾

교육 지원 청명	소위 원회 수	교육 지원 청 직원	구청 직원	교원, 퇴임 교원	전 교육 전문 직원	학 부 모	법조 인	경찰	의사	전문 가	청소 년활 동가	기타	합계 (명)
동부	7	2	0	1	4	15	5	5	0	0	0	7	39
서부	7	1	0	5	6	15	2	8	1	4	1	0	43
남부	7	2	0	8	4	15	6	6	1	0	2	0	44
북부	5	1	0	6	4	15	0	5	1	2	1	1	36
중부	7	2	0	10	0	13	1	10	0	0	0	1	37
강동 송파	9	2	0	7	0	15	8	6	0	5	0	0	43
강양 천	8	1	0	10	0	15	5	6	0	0	4	0	41
강남 초	7	2	0	9	3	21	4	7	0	2	0	1	49
동작 관악	7	2	0	10	3	21	4	7	0	0	0	3	50
성동 광진	7	2	0	11	0	19	5	9	0	0	2	0	48
성북 강북	7	2	0	14	0	19	3	7	1	3	0	0	49
합계 (명)	78	19	0	91	24	183	43	76	4	16	10	13	479
비율 (%)		3.97	0	19.00	5.01	38.20	8.98	15.87	0.84	3.34	2.09	2.71	

- 2)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 제13조제5항

○ 동 개정조례안 제13조제5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³⁾ 따른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 총회의 의결진행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총회 및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온라인 총회’ 개최 등 개학 후 학생안전 등 원활한 학교운영에 대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참여협력담당과-3833, 2020.4.2.).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학부모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바, 교육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